

# 주요 현안업무 보고

---

202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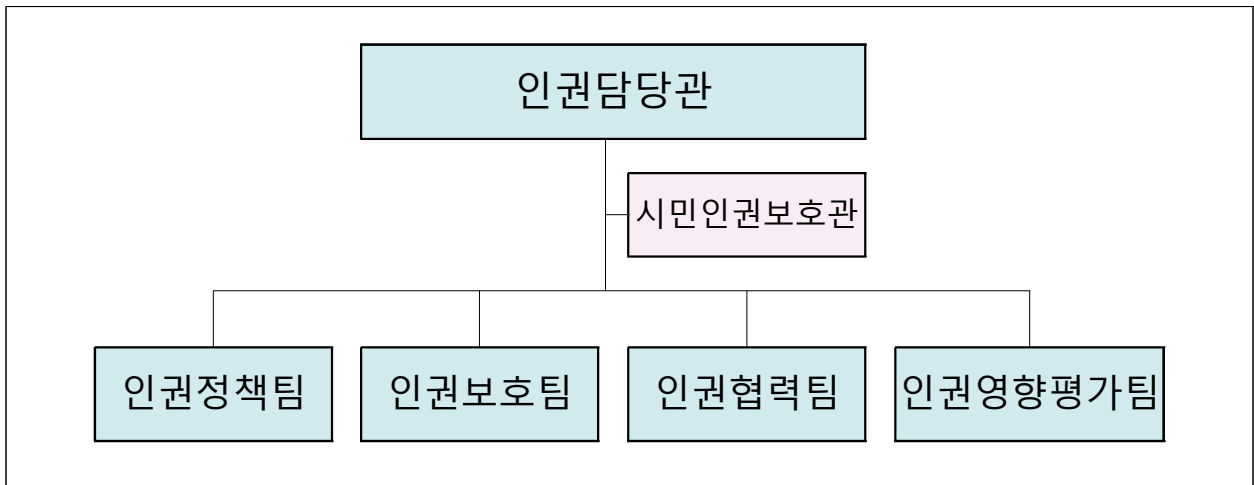
인권담당관

# 1. 일반 현황

## 1 조직 및 인력 ..... 1담당관 4팀

### □ 조 직

(’21. 4. 16 기준)



### □ 인 력(현원/정원)

(’21. 4. 16. 기준)

구 분	계	행 정							관리 운영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정 원	22	17	1	3	6	7	-	-	-	5	4	1
현 원	21	16	1	3	5	7	-	-	-	5	4	1
증 감	△1	△1	-	-	△1	-	-	-	-	-	-	-

※ 별도정원 1명 : 행정6급 1명(가사휴직)

## 2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21년 예산현액	집행액(4.16.기준)		집행률(%)		집행잔액	
		원인행위	지출	원인행위	지출	잔액	비율(%)
합 계	1,356,653	303,601	272,706	22.4	20.1	1,083,947	79.9
사업예산(계)	1,299,961	278,884	247,989	21.5	19.1	1,051,972	80.9
인권담당관	1,299,961	278,884	247,989	21.5	19.1	1,051,972	80.9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175,693	50,714	46,014	28.9	26.2	129,679	73.8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0,100	29,250	29,250	48.7	48.7	30,850	51.3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52,560	30,000	30,000	57.1	57.1	22,560	42.9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88,788	7,000	7,000	1.8	1.8	381,788	98.2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62,800	30,000	4,605	47.8	7.3	58,195	92.7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57,200	1,000	1,000	0.6	0.6	156,200	99.4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54,720	8,920	8,920	16.3	16.3	45,800	83.7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52,000	107,000	106,200	70.4	69.9	45,800	30.1
서울 인권 컨퍼런스	111,280	0	0	0.0	0.0	111,280	100.0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7,820	10,000	10,000	56.1	56.1	7,820	43.9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67,000	5,000	5,000	7.5	7.5	62,000	92.5
행정운영경비(계)	56,692	24,717	24,717	43.6	43.6	31,975	56.4
기본경비	56,692	24,717	24,717	43.6	43.6	31,975	56.4
기본경비(인권담당관)	56,692	24,717	24,717	43.6	43.6	31,975	56.4

### 3 팀별 주요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인 권 정 책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li> <li>◦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li> <li>◦ 조례, 규칙 등 법·제도 개선</li> <li>◦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선 권고사항 관리</li> <li>◦ 서울시 인권정책회의 운영</li> <li>◦ 서울 인권 콘퍼런스 개최</li> <li>◦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li> <li>◦ 인권정책 홍보 및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발간</li> <li>◦ 인사, 조직, 국회, 시의회, 예산, 회계 등 서무업무</li> </ul>
인 권 보 호 팀 (시민인권보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시민인권보호관) 운영</li> <li>◦ 시 관련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상담, 사건 통계 관리</li> <li>◦ 인권침해사항 조사(지원) 및 권고이행 관리</li> <li>◦ 2차 피해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 활동</li> <li>◦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li> <li>◦ 주거시설 등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적용 전파 및 점검</li> <li>◦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li> <li>◦ 인권무료법률 상담 운영</li> <li>◦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li> <li>◦ 지자체 및 인권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li> <li>◦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li> </ul>
인 권 협 력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서울 인권 아카데미 운영</li> <li>◦ 인권현장 발굴 및 표석화(바닥동판) 사업</li> <li>◦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li> <li>◦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li> <li>◦ 인권교육 표준강의안 개발 및 활용</li> <li>◦ 인권교육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운영</li> <li>◦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li> <li>◦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li> <li>◦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관리</li> </ul>
인 권 영 향 평 가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자치법규, 건축시설물, 정책·사업)</li> <li>◦ 인권영향평가 사후관리 및 제도적 안정화 추진</li> <li>◦ 인권영향평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개발</li> <li>◦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행사항 지도점검</li> <li>◦ 인권문화행사 개최</li> </ul>

## II. 주요 현안업무

---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2. 2021년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추진 계획 변경

---

3. 직원 인권교육 추진

---

4.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추진

---

#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상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조사대상 및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 인권침해 구제의 사각지대 해소

## □ 개정배경

- 현행 조례상 복지시설을 제외한 시의 지원을 받는 ‘법인·단체’ 등에서 인권침해 발생시 조사 및 구제 불가
- 직무요건 상(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기관의 업무 수행 종료 이후 조사 가능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미비점 존재

## □ 주요내용

- 인권침해 조사 직무범위에 ‘시의 지원을 받는 법인·단체’ 추가
-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업무수행이 종료된 후에도 조사 및 시정권고 가능토록 규정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제1항제5호	5.시의 지원을 받는 <u>각종 복지 시설</u>	5.시의 지원을 받는 <u>복지시설 및 법인·단체</u>
제20조제2항	<신설>	② <u>구제위원회는 제1항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업무수행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u>

## □ 추진경과

- 조례안 일부개정 입법계획 수립 : '21.3.3.
-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21.4.1. ~ 4. 21.

## □ 향후계획

- 시의회(제301회 정례회) 조례안 상정·심의 : '21. 6월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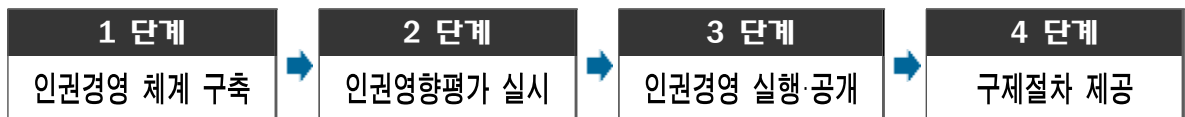
# 2021년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추진 계획 변경

「2021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 '21.2.26)」에 따른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추진 계획 변경사항을 보고 드림.

### □ 당초계획

#### ○ 출연기관 인권경영평가 배점 및 평가영역 확대 개선

- 배점 확대 : 1점('20년) ⇨ 2점('21년)
- 평가영역 확대 : 1단계('20년) + 2,3,4단계('21년)



### □ 주요 변경내용

#### ○ 출연기관 인권경영평가 배점 확정 : 2점(협의) → 1점

- 공기업담당관 경영지표개선 소동회의 결과, 다양한 평가분야 중 일자리 분야의 평가비중 상대적 강화
  - ▶ 장애인, 청년, 고등학교 졸업자 등 법정 의무고용 지표 배점 확대(2점 → 3점)

#### ○ 지도점검 대상기관 확대 : 25개 기관 → 26개 기관

- 공기업(5개 → 6개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0.12 신설), 출연기관(20개)

### □ 향후계획

#### ○ 변경된 기준 적용한 출연기관 인권경영평가 실시 : '21.3월~5월

- 평가대상(20개), 배점(1점), 범위(1~4단계), 방법(서면)

#### ○ 변경된 인권경영평가 기준 적용한 지도점검 실시 : '21.6월~9월

- 평가대상(26개), 배점(1점), 범위(1~4단계), 방법(서면+현장)

### 3

## 직원 인권교육 추진

서울시 전 직원 및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 및 「행정의 인권화」 실현

### □ 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인권교육)
- 대 상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모든 직원, 시의 위탁기관, 복지시설 등
- 내 용 : 인권아카데미, 모니터링, 콘텐츠 제작, 강사 양성

### □ 추진경과

- 인권 교육 추진 계획 수립 : '21.2월
- 인권 교육 운영 업체 선정 진행 중 : '21.4월

### □ 추진내용

- 인권 교육(인권아카데미)
  - 대상인원: 50,507명 ※ '20년도 이수율 87%(44,055명)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집합)교육, 비대면(온라인, 원격)교육 병행
- 모니터링
  - 전문가 평가단(8명)이 인권 교육 참관 후 모니터링 결과 공유
  - 교육생·강사 설문조사 및 교육생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개선 의견 반영
- 콘텐츠 제작
  - 구성: 3편(편당 10~15분), 강의, 토크쇼, 웹 드라마 등 교육용 영상
  - 주제: 인권 현안 및 소수자 인권 등 각종 혐오·차별에 관한 내용
- 강사 양성(제7기)
  - 교육생 모집 인원 40명, 교육시간 연간 100시간 (입문과정 50, 심화과정 50)  
※ '13~'20년 강사 양성 과정 수료생 총176명(제1~6기): 인권교육 활동 지원

### □ 향후계획

- 인권 아카데미, 콘텐츠 제작 등 운영업체 선정 완료 : '21.4월
-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모니터링, 강사 양성 착수 : '21.5월



## 4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추진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을 통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

### □ 사업개요

- 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8조  
-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책무로 규정되어 있어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 지원대상 :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 내 용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수행 법인에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21.1월 ~ 12월
- 사업비 : 152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150백만원, 사무관리비 2백만원)  
- 예산증액 및 지원법인 확대 : 1개 단체 30백만원(20년) → 5개 단체 150백만원(21년)

### □ 추진경과

-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지원법인 선정 : '21.2월 ~ 3월  
- 선정결과 : 5개 권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150백만원 지원
-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지원 금액의 70%) : '21. 3월

### □ 향후계획

- 보조금 집행 중간 점검 및 보조금(지원 금액의 30%) 지급 : '21.8월  
- 전문 컨설팅 업체의 법인 현장확인 및 점검,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 점검
- 최종 사업 평가 및 정산 : '21.12월  
- 전문 컨설팅 업체의 최종실적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평가  
- 사업부서 최종 점검 결과 보고 및 법인에 통보